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4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 조정(안 제3조)

- 당초 30%에서 → 15%로

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안 제6조)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정비

### 3.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2항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14 (제144회-본회의 제3차부록)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1. 10. 4 ~ 10. 24 (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기금 “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 관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해야 할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

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울산광역시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명</u>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u> <u>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u>재난관리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기금의 조성)</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u>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li> <li>2. ~ 3. (생략)</li> </ol>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u>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u>제명</u> :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p> <p><u>제1조(목적)</u>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 ----- <u>재난관리기금</u> ----- ----- -----.</p> <p><u>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u> <u>재난관리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li> <li>2. ~ 3. (현행과 같음)</li> </ol>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u>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당해연도</b>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p> <p>① <b>당해연도</b>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b>당해연도</b>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b>제6조(기금의 용도)</b> <u>기금은 범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p>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u>안전시설 설치</u></p> <p>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p> <p>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p> <p>4. 재난관련 장비 구입</p> <p><b>제10조(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울산광역시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u>울산광역시 중구구정조정위원회</u>가 이를 대행 한다.</p>	<p><b>제5조(해당 연도 -----)</b></p> <p>① <b>해당 연도 -----</b> ----- -----.</p> <p>② <b>해당 연도 -----</b> ----- ----- -----.</p> <p><b>제6조(기금의 용도)</b> <u>기금은 범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u></p> <p><b>제10조(심의위원회)</b> ① ----- ----- <u>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u> -----.</p> <p>② ----- <u>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u>-----.</p>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74)

##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1. 12. 01(목)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1. 12. 05(월)
- 위원회심사 : 2011. 12. 16(금)

### 3. 개정설명요지 (개정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 가.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 함

#### 나. 주요내용

-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 조정(안 제3조)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문구 정비

### 4.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2항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영호)

- 본 조례는 2011. 6. 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수해발생지역을 보다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 중 금고에 의무예치하는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 밖에 문구 일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